

## '92년도 畜産發展事業計劃 및 實施要領(1)

### - 家畜衛生課所管 -

農林水産部提供

#### I. 畜産물 위생

〈기본방침〉

- 畜産물 유해잔유물질 검사사업 강화
- 畜産물 검사원 교육
- 畜産물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 위생 도계육 유통 정착
- 원유 위생관리 강화
-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
- 축산폐수 처리, 연구, 용역, 확대
- 물먹인 쇠고기 신속 검사법 개발 연구
- 畜産물 위생용기 관리 개선
- 국비 축산물 검사원 업무지원

#### 1. 畜産물내 유해잔유물질 검사사업

##### 1). 畜産물내 유해잔유물질검사

##### ①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도모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유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

##### ②추진방향

- 축산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계도

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

-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체제 구축지원

##### ③추진계획

-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기간 : '92. 1~12월

○사업량 : 45,000건

소	돼지	닭	계
10,000건	20,000	15,000	45,000

##### ○검사대상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상물질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설파제) 등 유해잔류물질

##### ○검사방법

-축산물 작업장에서 채취된 獸畜의 근육시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스크리닝 검사 : EEC 4-plate method 적용실시>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보건사회부 고시)중 “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시험법”에 의거 정량분석 등 검사실시

##### ○검사결과 조치

-감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계도 및 규제검사 강화 등 특별관리,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

·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1차 검사)결과 잔유(양성) 판정시 :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 → 축산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

유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제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검사 실시  
· 2차 검사: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  
에 대한 규제검사(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유 등

유통에 제한)실시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사 업 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유해잔류물질검사 -검사 재료비	45,000 건	45,000 천원 (50%)	45,000 (50%)	90,000 (100%)	

○세부실시요령

내 용	주관(협조)
<p>○유해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 수립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능력 및 월별, 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 실시계획 수립 (별지 시·도별 사업량 참조)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수립후 '92. 1월말까지 당부에 보고</p> <p>○잔류물질검사 실시(검사 체계도 참조) -검사시료 채취 · 시료채취 장소: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도계장) · 시료채취 물량: 검사에 필요한 최소물량(근육 100g 이상, 정량분석검사에 필요한 시료량 포함) · 시료채취 방법: 1농장 1시료 무작위 채취</p> <p>※ 시료 채취시 시료 고유번호 부여, 출하 농장 주소 및 성명, 축종, 성별, 연령, 채취장소, 도축검사 신청인 등 기재: 잔류검사대장 작성·관리</p> <p>-검사방법 · 1차검사: 스크리닝검사 실시 · 2차검사: 스크리닝검사 및 정량분석검사 실시 → 스크리닝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추정(양성판정)시료에 대해 정량분석 실시 항생물질 잔류추정 시료: 가축위생연구소에 분석 의뢰(해당시료 및 스크리닝 검사, 성적 등 동봉·송부 요) 합성항균제(설과제)잔류추정 시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HPLC 등 검사장비에 의한 정량 분석</p> <p>○검사결과 조치 -1차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양성판정)시료 발생시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축종, 농장 소재지 축주명 등) -시·도지사는 특별관리 대상농장 내역, 특별관리 대상농장에 대한 2차검사 결과 등을 타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조치 -특별관리대상농장에 대한 내역 등이 통보된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2차 검사(규제검사)실시 등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 해당가축 출하농장 특별관리 실시조치 철저(대장 작성관리) ·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해당농장 제도 실시 ·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강화(2차검사 실시) : 도축전 특별관리 대상여부 확인철저 →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유 등 유통제한 * 2차 검사(규제검사)실시 결과 잔류물질 미검출(음성 판정)시 특별관리 해제</p> <p>○기 타 -시·도지사는 월별 검사실적(별지 보고서식 참조)을 다음달 10일까지 당부에</p>	<p>시·도 (가축위생시험소)</p> <p>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p> <p>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연구소)</p> <p>가축위생연구소 (시·도)</p> <p>시·도 (가축위생시험소)</p>

내 용	주관(협조)
보고할 것 -시·도지사는 양축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잔류물질방지대책 계도·홍보 등을 적극 실시토록 할 것 -잔류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민원야기 방지철저 ·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수시실시 등 검사능력 배양 및 숙련도 제고방안 지속 강구·추진 · 검사성적의 기록유지 등 동사업 실시와 관련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철저 · 검사실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장비의 확보·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시·도별 사업량 및 검사재료비 배정(계획)

	사 업 량				재 료 비 (국비)	비 고
	소	돼 지	닭	계		
	건				천원	
서울	1,200	2,400	400	4,000	4,000	
부산	600	1,200	700	2,500	2,500	
대구	600	900	1,000	2,500	2,500	
인천	300	1,000	700	2,000	2,000	
광주	400	700	400	1,500	1,500	
대전	200	500	300	1,000	1,000	
경기	1,200	2,400	2,400	6,000	6,000	
강원	900	1,200	900	3,000	3,000	
충북	500	1,500	1,000	3,000	3,000	
충남	700	1,400	1,400	3,500	3,500	
전북	500	1,500	1,500	3,500	3,500	
전남	700	1,500	1,300	3,500	3,500	
경북	900	1,500	1,100	3,500	3,500	
경남	1,000	1,500	1,500	4,000	4,000	
제주	300	800	400	1,500	1,500	
계	10,000	20,000	15,000	15,000	45,000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적

(단위 : 건)

축종	년 간 계	간 획	당 월				누 계				비 고			
			계	획	실	적	검	출	미	검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소														
돼														
닭														
계														

○유해잔류물질 검출(양성판정)시료 발생시 축종, 농장소재지, 축주명, 검사일, 타 시·도 등보일자 등 기재

○특별관리 실시상황(농가 계도실적, 2차 검사결과 내역 등)기재

2) 검사장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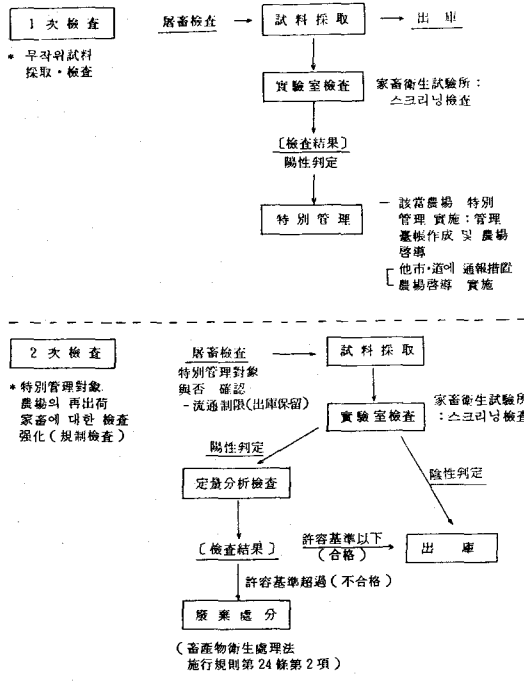
①목 적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잔류물질 검사체제 구축

-잔류검사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도모

○유해잔류물질 검사의 신속·정확성 유지 및 신

## 검 사 체 계 도



### 회도 제고

#### ②추진방향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의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 기능강화
- 효율적인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본소에 HPLC 등 검사장비 증점 설치·운용

#### ③추진계획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 : 15개소
-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소
- 사업실시기간 : '92년내 구입·설치
- 기 타
-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은 3/4분기초 조기배정 계획인 바, 각 시·도에서는 검사장비

####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HPLC등 잔류물질검사장비 (부속장비 포함)구입지원	15대 (15개 시·도×1대)	35	262.5 (50%)	262.5 (50)	525.0 (100)

조기구입 및 설치완료 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시·도지사는 동 사업완료후 당부에 결과 보고

## 2. 축산물검사원 교육

### 1) 목 적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잔류물질 검사기술 훈련 등 축산물 검사원 자질향상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검사능력 배양

### 2) 추진방향

- 축산물검사요원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 기술훈련 실시
- 양축농가 계도 등을 위한 잔류방지대책 교육 병행
-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관련 기술교육 실시

### 3) 추진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교육 실시기관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 실시기간
- '92 상반기중 년 2회 실시, 교육기간 2주

### ○교육대책

대 상	인 원	비 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요원 (연구직, 수의직) ※ 서울시는 보건환경 연구원	60명 (30명 ×2회)	-대구·인천·광주· 대전 및 제주도는 각 1명, 경기·충남·전남· 경북·경남은 각3명, 기타 시·도는 각2명 : 계 30명

### ○교육내용

- 유해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장비활용기술
-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교육병행
- 도계 검사요령
- 원유 검사요령

○사 업 비

구 분	예산내역(국비)	비 고
-수 당	강사수당 1,000천원	* 교육교재는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제작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교재비 2,850천원	
	계 3,850천원	

○기 타 : 세부사항은 교육시기 확정후 시달 계획

3.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1) 목 적

- ① 축산물의 위생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② 작업장의 위생처리 시설확충으로 축산물 수급 원활 및 환경위생 기여

2) 추진계획

- ① 축산물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점검
  - 대상업소 : 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농림수산부 : 년 1회 이상
  - 점검 시·도 : 년 2회 이상
  - 점검착안사항
    - 허가내용 및 시설기준(지육 및 내장검사대 설비 중점)
    - 작업장내 위생관리상태
    - 도살·해체 수수료 과정 징수 여부
  - 점검 결과 조치 : 시·도지사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 ②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한 통폐합 대상 도축장의 중점지도 관리
- ③ 경영부실 도축장 및 도계장의 임대, 위탁관리 지양
- ④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 작업장 허가변경 관리
- 수축 및 축산물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철저이행

4. 위생 도축육 유통 정착

1) 목 적

- 도계장 시설 현대화로 위생 도계육 공급 및 계육 유통구조 개선
- 노계처리 도계시설 확충으로 노계의 적기 도태를 유도하여 양계산업 육성
-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 내장 등 부산물

의 적정처리로 환경공해 방지

2) 기본방침

- ① 위생 도계육 유통지역 확대지정
  -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 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 90-10호, '90. 3. 12)에 의거 유통지역 확대 방안 강구
  - 닭 : 전국을 유통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
  - 오리 : 시·도지사의 의견을 검토, 유통지역 고시 확대
- ②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
  -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계장에 한하여 타 시·도 냉장(동) 반출허용
  -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
  - 반출시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
  - 도살·해체 수수료 부정징수 및 탈세행위 지도 감독 철저
- ③ 영세·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로 도계경영 생활화
  - 도계장 신규설치 허가시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 계열화 및 노계전문도축장을 제외한 신규 도계장 허가 제한
- ④ 주간도계 및 자가도계체제 전환으로 검사업무 강화
- ⑤ 도계장 경영 및 도계육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천 서식은 '92. 2월중 시달 예정

3) 자금지원계획

- ① 사업주체 : 시·도지사
- ② 지원대상 : 도계시설(가공, 비축시설 포함)개선, 노계처리시설 및 노계 부산물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
- ③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
  - 자금관리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사업기간 : '92. 3~'92. 12
- ⑤ 사 업 비 : 6,500백만원(축산진흥기금, 융자)
- ⑦ 융자조건 : 5년거취, 5년 균분 상환(년이 8%)

⑥지원내용

사업명	물량	지원단가	사업비	재원별			용자비율
				계	축진기금	자담	
도계장시설현대화	개소 5	500	2,500	5,000	2,500	2,500	용자 50%
노계전문도계시설	1	1,000	1,000	2,000	1,000	1,000	용자 50%
도계부산물처리시설 - 개별시설	10	100	1,000	2,000	1,000	1,000	용자 50%
- 공동시설	2	1,000	2,000	4,000	2,000	2,000	용자 50%
계	18		6,500	13,000	65,000	65,000	

4) 세부실시요령

- ①시·도지사가 '92. 2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
- ②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자체 자금투자내용 포함)
  - 시·도지사 검사 의견서
  - 도계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 최근 2년간 월별 도계실적(자가, 위탁 구분)
  - 도계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부산물처리시설 해당자에 한함)
  - 해당 도계장의 사업에 대한 대한가금처리협회의 의견서
- ③기 타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천서식은 추후 시달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대상자 확정시 시달

5. 원유 위생관리 강화

1) 목적

- 원유의 위생적인 생산·공급으로 유우 및 유제품 품질향상
- 원유검사 철저히 공중위생향상 및 낙농업발전 도모

2) 추진계획

- 목장위생
  - 착유우 검사 관리철저
    - 가축위생시험장 : 년 1회 이상
    - 자체검사원 : 년 2회 이상
- 집유위생
  - 냉장 또는 보냉차량에 의한 신속한 집유 및 운송 등으로 원유의 신선도 제고
- 원유검사
  - 원유검사 강화로 위생적인 원유생산·공급 도모
  - 자체검사원 및 원유검사보조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 원유검사 이행여부 등 확인·점검

-자체검사 감독철저로 낙농가의 민원해소

· 주 1회 이상 원유검사 실시상황 입회확인(가축위생시험소) : 유지방울, 세포수 검사 등

6.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계획

1) 목적

- 양축농가와 정화촌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 고취
-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

2) 기본방침

- 법적규제 이하농가 간이정화시설(간이저장조, 톱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보조 및 용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신고대상농가의 정화시설(저장액비화, 톱밥발효돈사 등) 자금용자
-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톱밥제조시설 및 공동저장탱크 시설비 보조
- 축산농가에 퇴비처리장비 및 비료화설비 자금용자
-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계분비료공장, 축분발효시설) 지원
-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

4) 세부 실시요령

①선정권자 : 시·도지사

②선정절차

-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퇴비처리장비 : 현지조사(시·군, 축협)→사업량 보고(시·도)→사업물량 확정(농림수산부)→대상자 확정(시·도)
- 분뇨처리장비, 톱밥제조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 현지조사(시·도, 축협도지회)→사업량 및

3) 사업계획

②사업비 : 38,800백만원(농발기금 35,580/축진기금 2,950)

①사업주체, 대상 및 기간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대상	사업기간
○간이정화시설 -간이저장조, 톱발발효 돈사, 건조장(퇴비사)	시·군	법적 규제이하 영세양축농가 -소 : 10두 이상 -돼지 : 50두 이상	'92. 1~12월
○정화시설 -저장액비화 시설 등 -톱발발효돈사, 톱발 우사 -건조장(퇴비사)	시·군	법적 규제 농가중 신고 대상농가	'92. 1~12월
○분뇨운반장비	시·군	-지역축협(업종조합 포함)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단체 -기타 시장·군수가 정관 등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한 20호 이상의 축산농가	'92. 1~12월
○톱발제조시설	시·군(도)	지역축협(업종조합포함) -지방자치단체	'92. 1~12월
○분뇨공동저장탱크	시·군	-분뇨운반장비와 같음	'92. 1~12월
○분뇨공동처리시설	시·군	-지역축협(업종조합 포함) -낙농, 육우, 양돈, 양계단체	'92. 1~12월
○개별농가비료시설	시·군	-법적규제대상농가	'92. 1~12월
○퇴비처리장비	시·군	-법적규제대상농가	'92. 1~12월
○정착촌 구조개선	시·도지사	-축사 100동 이상, 닭 30천수 이상 또는 돼지 5,000두 이상 사육농장으로 집단민원 다발지역	'92. 1~12월

③지원내역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합계	농발(축진)기금			국비	지방비	자담
				소계	용자	보조			
간이정화시설	개소 6,900	3	20,700	20,700	14,490	6,210	-	-	-
정화시설	600	10	6,000	6,000	6,900	-	-	-	-
분뇨운반장비	50	21	1,500	1,050	-	1,050	-	-	450
톱발제조시설	4	150	1,200	(600)	-	(600)	-	-	600
분뇨공동저장탱크	10	35	500	(350)	-	(350)	-	-	150
분뇨공동처리시설	6	700	6,000	4,200	1,200	3,000	-	-	1,800
개별농가비료시설	20	50	2,000	(1,000)	(1,000)	-	-	-	1,000
비료처리장비	100	10	1,000	(1,000)	(1,000)	-	-	-	-
정착촌 구조개선	13	300	3,900	3,900	-	3,900	-	-	-
계			42,800	38,800	23,690	15,110			4,000

※ '92농어촌발전기금 예산내역에서 간이정화시설[11,500개소, 보조 10,350백만원(30%) 및 용자 10,350백만원(30%), 지원단가 1,800천원]과 정화시설[1,000개소, 용자 6,000백만원(60%), 지원단가 6백만원]은 '91사업 지원내역과 동일하게 변경, 조정한 것임.

○용자 및 보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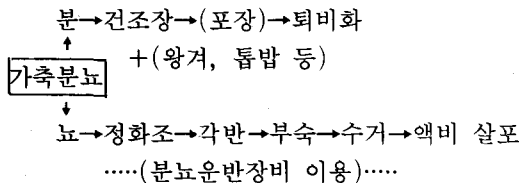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개소당자금한도		보조비율
		계	거치	상환	용자	보조	
간이정화시설	년 3%	10년	3	7	3백만원	-	-
정화시설	년 3%	10년	3	7	10백만원	-	-
분뇨운반장비	-	-	-	-	-	21백만원	70%
톱밥제조시설	-	-	-	-	-	1.5억원	50%
분뇨공동저장탱크	-	-	-	-	-	35백만원	70%
분뇨공동처리시설	년 3%	10년	3	7	200백만원	5억원	50%
개별농가비료시설	년 4%	10년	3	7	50백만원	-	-
퇴비처리장비정착촌구조개선	년 3%	10년	3	7	10백만원	-	-
	-	-	-	-	-	3억원	-

대상자 보고(시·도)→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농림수산부)

○정착촌구조개선 : 사업 타당성 검토(시·군, 한성협동회)→사업계획 보고(시·도)→사업확정(농림수산부)

③운영방법 및 체계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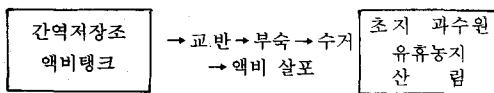
○(간이)정화시설



※운영주체 : 개별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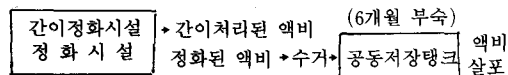
○분뇨공동처리시설, 개별농가 비료시설 : 사업 타당성 검토(시·군, 지역축협)→사업계획 보고(시·도, 축협도지회)→사업확정(농림수산부)

○분뇨 운반장비



※운영주체 :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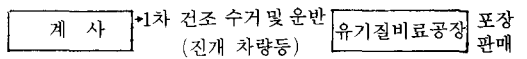
○분뇨공동저장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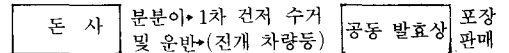
※운영주체 :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

○분뇨공동처리시설

[계분, 비료공장]



[축분 발효시설]



※운영주체 :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

④사업추진

농림수산부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사업추진의 총괄지도 감독

○축협중앙회에 최종사업계획 통보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원금액 파악

○축협도지회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통보

○사업시행 추진 지도감독

시·군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동조사반 운영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원금액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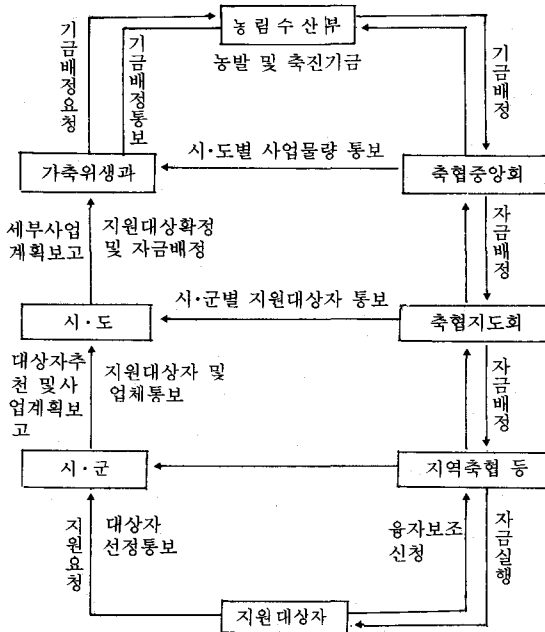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⑤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⑥기타 세부사업 추진요령은 사업대상자 확정시 시달계획



※사업추진 체계도



7. 축산폐수처리 연구용역

1) 목 적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정화시설 방법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비료화)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환경오염을 극소화 하는데 있음.

2) 연구방법

① 문헌조사 : 축산공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문헌수집, 검토

② 출장조사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의 유통실태  
외국의 축산공해 방지대책 및 자원화 활용실태

③ 계량적 분석

가축분뇨가 토양 및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의 생산 및 유통분석

3) 연구내용

① 1년차('90년도)

- 현황조사 및 수집분석
- 축산폐수처리 실태조사
- 축산폐수 처리방법 및 보급실태
- 축산분뇨의 이용 및 처리대책 방향(영세 양축 농가)

② 2년차('91년도)

-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방법
-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방안
- 외국의 축산폐수처리실태 현지조사(일본)
- 톱밥수급, 비료판매 등 폐수시설 관련 기자재 조달방안
- 축산폐수처리 기술개발

③ 3년차('92년도)

-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방안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및 액비화 방법(계속 사업)
- 가축분뇨의 부숙도 측정방법(신규사업)
- 가축분뇨의 퇴비 및 액비생산과 유통촉진방안(신규사업)
- 축산분뇨가 토양 및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시험지역 전국확대)
- 가축분뇨의 수질오염도 분석(신규사업)
- 톱밥돈사(우사)의 질병 방지대책(계속사업)
- 외국의 축산폐수처리실태 현지조사

4) 연구기관

- 주체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조 : 국립중축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 연구기간 : '92. 1~12

6) 재원 : 140백만원(축산진흥기금/축산정책 연구용역비)

7) 최종보고서 제출 : '92년 12월 30일

8) 연구보조기관별 업무 등이 포함된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용역 체결시 시달

8. 물먹인 쇠고기 신속 검사법 개발 연구

1) 목 차

물먹인 쇠고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부정축산물유통 근절로 국민보건 향상

2) 연구내용

① 1년차('90년도)

-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 부정 쇠고기와 정당 쇠고기의 이화학적 성분 규명
- 검사방법의 개발 및 적용시험
- 중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② 2년차('91년도)

- 실용화를 위한 보완시험 및 검사법의 확립
- 현장적용을 위한 측정기술 교육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③ 3년차('92년도)
- 개발된 내용에 대한 검사요원 교육
- 소 품종별 오차한계 규명 및 저하시험
- 도체 온도차이에 의한 실행정확도 향상, 오차한계 저하연구

3) 연구기관 :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연구기간 : 1990~1992(3년간)

5) 재원 : 24백만원(축산진흥기금·축산정책연구용역비)

6) 최종보고서 제출 : '92년 12월 30일

7)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용역 체결시 시달

### 9. 축산물 위생용기 관리개선

#### 1) 목 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착유기, 도축검인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불량위생용기의 제조 및 유통을 방지,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2) 대상업소

① 위생용기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② 집유장

③ 무허가 제조업소

#### 3) 관리대상 품목

착유기, 냉각기, 잡유탱크, 원유통, 도축검인기, 도축검인용 색소

#### 4) 제조업소 시설점검

○시·도 : 년1회 이상

○농림수산부 : 필요시

#### 5) 축산물위생용기 제조허가 시·도 위임

○방법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 형행 농림수산부장관의 착유기, 냉각기, 집유탱크의 제조업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④사업비

### 10. 물먹인 쇠고기 신속검사장비 (NIR System)지원

#### 1) 목 적

물먹인 쇠고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실시로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및 국민보건 향상

#### 2) 추진방향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물먹인 쇠고기 신속검사장비(Nearinfrared system) 구입 지원

#### 3) 추진계획

①사업주체 : 시·도지사

②지원대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92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7개 시·도)

○'93(계획)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제주(8개 시·도)

#### ③사업기간

'92년 3/4분기내 구입 및 설치완료하여 물먹인 쇠고기 검사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⑤기타

○국비예산은 3/4분기초 배정계획인바, 해당 시·도에서는 검사장비 조기구입 및 설치완료 등 물먹인 쇠고기 검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물먹인 쇠고기 검사사업 세부실시요령은 검사장비 구입, 검사요원 교육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별도 시달계획임.

### 11. 시·도의 국가수의직공무원 인건비 배정

#### 1) 목 적

○예산회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분기별 예산재배정

○예산회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월별 자금배정

#### 2) 추진계획

○분기별 인건비 예산재배정 및 월별 자금배정

사 업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물먹인 쇠고기 신속검사장비 (NIR System)지원	7대	80	280 (50%)	280 (50%)	560 (10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각 1대

○인건비 집행자료 제출: '92. 1. 31(서식 1)  
○분기별, 성질별, 목별, 예산집행액

전화통보: 매분기말 월 10일(요령 1)  
○'92 예산편성자료 및 인건비 배정계획: 별첨

인건비 집행근거

① 근무처	② 정 원	③ 현 원	④ 직 급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근무년수	⑧ 호봉	부 양 가 족			비 고
								⑨ 배우자유무	⑩ 존 속	⑪ 비 속	

작성요령

①시·도청 및 가축위생시험소명, ⑨배우자 유무, ⑩존속: (남)만 60세이상, (여)만 55세이상, ⑪비속: 18세미만

예산집행예산액통보(매분기말일 기준)

성질별①	목 별	재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주) ① 성질별: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국가수의직 축산물검사원 인건비편성내역

1. 101(급여): 985,988천원

가. 급 여

직 급	인 원	월 액	년 액	금 액
6 급	54명	561.2	6,734.4	363,657천원
7 급	100	462.4	5,548.8	554,880
8 급	1	375	4,500.0	4,500
계	155			923,037

나. 처우개선비:  $923,037 \times 9\% = 83,073$

다. 절감액:  $1,006,110 \times \Delta 2\% = \Delta 20,122$

2. 102(상여금): 476,561천원

가. 기말수당:  $985,988 \text{천원} \times 4/12 = 328,663$

나. 정근수당:  $985,988 \text{천원} \times 1.8/12 = 147,898$

3. 105(정액수당): 652,762천원

가. 가족수당: 65,565

(1)배우자:  $15,000 \text{원} \times 155 \text{명} \times 0.74 \times 12 \text{월} = 20,646 \text{천원}$

(2)직계존속:  $15,000 \text{원} \times 155 \text{명} \times 0.48 \times 12 \text{월} = 13,392 \text{천원}$

(3)기타가족:  $15,000 \text{원} \times 155 \text{명} \times 1.13 \times 12 \text{월} = 31,527 \text{천원}$

나. 자녀학비수당: 25,389천원

(1)중학교  $81,500 \times 155 \text{명} \times 0.19 \times 4 \text{회} = 9,601 \text{천원}$

(2)고등학교(가):  $139,000 \times 155 \text{명} \times 0.16 \times 4 \text{회} = 13,789 \text{천원}$

(3)고등학교(나)  $107,500 \times 155 \text{명} \times 0.03 \times 4 \text{회} = 1,999 \text{천원}$

다. 장기근속수당: 105,360천원

(1)5년이상 10년미만:  $40,000 \text{원} \times 46 \text{인} \times 12 \text{월} = 22,080 \text{천원}$

(2)10년이상 15년미만:  $50,000 \text{원} \times 32 \text{인} \times 12 \text{월} = 19,200 \text{천원}$

(3)15년이상 20년미만:  $60,000 \text{원} \times 41 \text{인} \times 12 \text{월} = 29,520 \text{천원}$

(4)20년이상:  $80,000 \text{원} \times 36 \text{인} \times 12 \text{월} = 34,560 \text{천원}$

라. 위험근무수당(갑종):  $11,000 \text{원} \times 155 \text{인} \times 12 \text{월} = 20,460 \text{천원}$

마. 기술업무수당: 27,840천원

(1)6~7급:  $15,000 \text{원} \times 154 \text{인} \times 12 \text{월} = 27,720 \text{천원}$

(2)8~9급:  $10,000 \times 1 \text{인} \times 12 \text{월} = 120 \text{천원}$

바. 대우수당: (6~8급) 116명: 46,620천원

사. 직무수당(155명): 361,528천원

4. 104(수당): 769,734천원

-공수의수당:  $160,000 \text{원} \times 360 \text{인} \times 12 \text{월} = 691,200 \text{천원}$

-시간외근무수당(155명): 78,534천원

5. (국내여비): 79,515천원

-월액여비:  $45,000 \text{원} \times 155 \text{인} \times 12 \text{월} \times 0.95 = 79,515 \text{천원}$

6. 229(재료비 기타): 7,163천원

가. 도축검사용 색소

(1)소:  $9,000 \times (600 \text{천두} \div 3 \text{천두}) = 1,800 \text{천원}$

(2) 돼지 :  $9,000 \times (2,855\text{천두} \div 6\text{천두}) = 4,283\text{천}$

원

나. 원유검사 실시재료비 :  $15\text{원} \times 600\text{천두} \times 3/25 = 1,080\text{천원}$

7. 228(복리후생비) : 440,285천원

가. 정액급식비 :  $50,000\text{원} \times 155\text{인} \times 12\text{월} \times 0.98 = 91,140\text{천원}$

나. 가계보조비 : 163,817천원

(1) 6~7급 :  $90,000 \times 154\text{인} \times 12\text{월} \times 0.98 = 162,994\text{천원}$

(2) 8~9급 :  $70,000 \times 1\text{인} \times 12\text{월} \times 0.98 = 823\text{천원}$

다. 체력단련비(155인) : 123,248천원

-급여의 150%(4월 : 75%, 10월 : 75%)

라. 효도휴가비 :  $50,000 \times 155\text{인} \times 1\text{회} = 7,750\text{천원}$

마. 년간보상비(155인) : 54,330천원

'92 국가수의직 6~7급 축산물 검사원 인건비 배정계획 (단위 : 천원)

시·도별	정 원 ( )	급 여 (101)	상 여 금 (102)	시간외수당 (102)	정액수당 (105)	여 비 (211)
부 산	3	19,000	9,200	1,530	12,520	1,620
대 구	3	20,300	9,800	1,620	12,520	1,620
인 천	2	13,100	6,300	1,060	8,480	1,080
광 주	3	19,000	9,200	1,530	12,520	1,620
경 기	26	165,500	79,900	13,190	109,530	13,251
강 원	11	70,300	33,900	5,530	46,290	5,611
충 북	10	64,300	31,100	4,950	42,120	5,101
충 남	16	101,200	48,800	8,010	67,550	8,156
전 북	18	114,300	55,300	9,190	75,890	9,177
전 남	19	121,500	58,800	9,660	80,060	9,688
경 북	20	126,100	61,100	10,130	84,230	10,203
경 남	19	120,200	58,100	9,660	80,060	9,668
계 주	5	31,100	15,000	2,470	20,990	2,770
계	155	985,900	476,500	78,530	652,760	79,515

'92 국가수의직 6~7급 축산물 검사원 인건비 배정계획 (단위 : 천원)

시·도별	복 리 후 생 비 (228)					계
	급식·가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	년가보상	소 계	
부 산	5,040	2,370	150	1,090	8,650	52,520
대 구	5,040	2,540	150	1,090	8,820	54,680
인 천	3,360	1,640	100	760	5,860	35,880
광 주	5,040	2,370	150	1,090	8,650	52,520
경 기	42,800	20,680	1,300	9,050	73,830	455,201
강 원	18,100	8,780	550	3,810	31,240	192,871
충 북	16,400	8,040	500	3,490	28,430	176,011
충 남	26,300	12,650	800	5,560	45,310	279,026
전 북	29,600	14,280	900	6,320	51,100	314,957
전 남	31,200	15,180	950	6,660	53,990	333,698
경 북	32,870	15,760	1,000	6,980	56,610	348,373
경 남	31,200	15,020	950	6,650	53,820	331,528
계 주	8,000	3,890	250	1,750	13,890	86,150
계	245,950	123,200	7,750	54,300	440,220	2,713,405

## II. 가축방역사업

〈목 적〉

○가축전염병의 발생·전파·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 보건향상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추진방향〉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정책 추진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도태사업 확대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진방역체제로 점차 유도

-양계협회에 자체검사실 설치 및 계군혈청검사사업 정착유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

-년차별 시·도시시험소 증설 및 기술인력양성과 정밀검사장비 확보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 확대추진

○축산물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

-도축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에 대한 추적조사와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로 도축장 검사제도 정착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구현

○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거양

-동물약품제조업의 시설기준강화 및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자가검정제도 정착

〈주요사업 추진내용〉

○검진 및 도태사업

-우결핵검진 및 조사확대 : 젖소 255천두, 종축장 한·육우 3,000두

-부루세라검진 및 조사확대 : 젖소 110천두(MR-T), 도립종축장(소, 돼지)10천두

-제주도 부루세라 근절사업 : 소, 말, 양, 돼지 77천두

· 검사방법의 개선으로 검진업무의 효율적 추진

○가축혈청검사사업(11종)

-주요가축전염병의 혈청에 의한 면역항체가 조

사로 질병초기 검색

-소(2종), 돼지(3종), 닭(6종)에 대하여 실시

○돼지오제스키병 검색(190천두)

-종돈장 및 허가·등록 양돈장의 청정농장지정 유도(71,800두 검진)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추적조사 확대(118,200두 조사)

○기생충구제

-소 우간질감염실태조사(간질검진 100천두)

-소 간질구제(60천두) 및 소 진드기 구제(3,000천두)

○젖소의 유방염검사

-젖소의 연령별, 지역별, 원인군별 감염실태조사와 치료약제의 감수성시험 및 결과통보(31천두)

· 유방염방역대책에 활용

○진도건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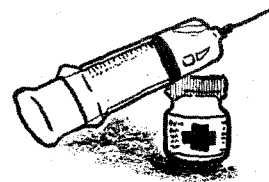
-진도건의 순종번식과 보호를 위한 특별방역 실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체별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양계협회에서 계군혈청검사사업실시를 위한 자체실험실 설치운영(사업비 185백만원)

-종계장(220개소)에 대하여 주요 닭 전염병 6종 5천수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협조 및 검사결과에 대한 자율방역대책 추진



가축방역사업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방주사	4,000천두	1,267,600	830,950	436,650	-
검진	645	91,000	46,000	45,000	-
진단액구입	(377)	97,000	97,000	-	-
기생충구제	3,060	210,000	147,000	63,000	-
혈청검사사업	178천건	152,540	152,540	-	-
오제스키병근절	190천두	414,000	380,200	33,800	-
유방염 감염조사사업 등	31	217,500	217,500	-	-
결핵·부루세라병 조사사업	10	2,000	2,000	-	-
계	8,114	2,451,640	1,873,190	578,450	-
진도견방역	24천두	30,000	21,000	9,000	-
가축위생시험소 증설	4개소	363,784	181,892	181,892	-
살처분보상	3,395두	889,200	889,200	-	-
제주도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77천두	317,000	120,000	197,000	-
계군혈청검사사업 지원	30천건	185,000	100,000	-	85,000
합계		4,236,624	3,185,282	966,342	85,000

1.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1) '92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

(단위 : 천두, 천수,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우	탄저·기종저(혼합)	670	53,600	23,450	30,150	
		기종저	400	20,000	5,600	14,400	
		전염성 비기관염	200	306,000	210,000	96,000	
		소 유행열	30	90,000	90,000	-	
	돈	돼지콜레라	700	63,000	29,400	33,600	
		일본뇌염	1,500	570,000	367,500	202,500	
	견	광견병	500	165,000	105,000	60,000	
		소계	4,000	1,267,600	830,950	436,650	
	검진및 진단액 구입	우	우 결핵	255	51,000	25,500	25,500
			부루세라(MRT)	110	11,000	5,500	5,500
부루세라(Plate)			30	6,000	3,000	3,000	
우 간질			100	20,000	10,500	9,500	
진단액구입			(337)	97,000	97,000	-	
계		추백이	150	3,000	1,500	1,500	
소계	645	188,000	143,000	45,000			
기생충 구제	우	진드기	3,000	150,000	105,000	45,000	
		간질	60	60,000	42,000	18,000	
		가축혈청검사사업	178	152,540	152,540	-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190	414,000	380,200	33,800	
		유방염 감염조사사업 등	31	217,500	217,500	-	
		우결핵·부루세라병 조사사업	10	2,000	2,000	-	
합계			8,114	2,451,640	1,873,190	578,450	

2)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량(총괄)

구 분	총 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기 (혼합)	기종저	소전염 성비 관	소 유행열	돼 지 플레라	돼 일 노	지 본 염
서울	65.5	53.5	0.5				1	2	50
부산	51.4	43	1				2	15	25
대구	53.4	40	6				4	20	10
인천	68.8	47.5	5.5				2	20	20
광주	37.6	25		5	2		2	10	6
대전	39.8	27		3	2		2	13	7
경기	1,091.2	82.9	234	-	25		140	250	180
강원	779.9	195		70	15		25	50	35
충북	366.05	205		60	20		25	50	35
충남	784.3	670		90	30		190	300	60
전북	469.8	292		72	20		70	120	10
전남	1,374.6	405		100	25		80	170	30
경북	990.5	605	250		30		70	230	25
경남	1,045.6	454	143		26		80	200	5
제주	705.55	79	30		5		7	30	7
가위연 중앙	62	30				30			
계	7,986	4,000	670	400	200	30	700	1,500	500

구 분	검 진						구 제		가축혈청 검사사업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유 방 염 감염조사	우결핵 조사사업	및 라
	소 계	우결핵	부 세 (MRT)	부 세 (Plate)	추백리	우간질	진드기	간질충					
서울	4.6	0.5	4	0.1					1	6	0.4		
부산	2.2	1.5	0.5	0.2					1	4.2	1		
대구	7.2	2	1	0.2	2	2			1	4.2	1		
인천	13.8	6	2.5	0.3	1	4			1	4.5	2		
광주	6.1	2	1	0.1	1	2			1	4.5	1		
대전	6.6	1	0.5	0.1	3	2			1	4.2	1		
경기	218.5	90	43.5	5	70	10			5	35	3	0.7	
강원	34	13	6	3	2	10	500	30	4	11.5	3.6	1.8	
충북	42.5	17	5	1.5	9	10	100		4	11.4	2.5	0.65	
충남	84	27	17	2	28	10			5	19	3.5	2.8	
전북	45.5	14	5	1.5	15	10	100	10	5	14	2.5	0.8	
전남	38	17	5	2	4	10	900	10	4	14	3	0.6	
경북	56	28	8	2	8	10	300	5	5	16	3	0.5	
경남	63	34	11	2	6	10	500	5	4	15	3	1.6	
제주	18	2		10	1	5	600		2	5.5	0.5	0.55	
가위연 중앙									6	21			
계	645	255	110	30	150	100	3,000	60	50	190	31	10	